

# 교보생명 퇴직연금

## 가입자 교육자료



본 자료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와 제33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실시를 위해 동법 시행령 제32조와 제36조를 근거로 작성되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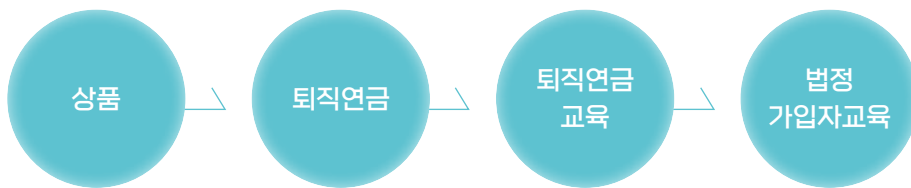
# 퇴직연금 가입자교육 안내

본 교육자료는 퇴직연금제도 가입자(근로자)가 제도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체계적인 노후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퇴직연금제도 주요 내용과 제도 운영 현황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2조 제1항 및 제33조 제5항)

회사에서는 가입자가 수시로 본 교육자료를 열람할 수 있도록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퇴직연금 가입자 등에 대한 교육 방법)에 따라 사업장 내 게시판 또는 인트라넷에 상시 게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 본 교육자료는 교보생명 PC홈페이지(<https://www.kyobo.com>) 또는 교보생명 모바일App(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교보생명' 검색 후 설치) 상품>퇴직연금>퇴직연금 교육>법정 가입자교육 탭에서 조회/내려받기가 가능합니다.

## '교보생명' 검색 후 설치



금융결제원의 '어카운트 인포' 모바일 앱을 통하여 폐업기업 근무기간에 적립되어 현재 금융회사에서 위탁 관리되고 있는 퇴직 연금을 확인 가능하며 본인 계좌, 카드, 보험 등 금융자산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 제공

▷경로: 플레이스토어 또는 앱스토어에서 '어카운트 인포' 검색 후 설치



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 통합연금포털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퇴직연금 제도별로 자신의 적립금 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금과 관련된 다양한 정보와 재무설계서비스를 제공

▷경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https://www.fss.or.kr>) > 금융통계 > 연금통계 > 통합연금포털 > 내 연금조회



KYOBO 교보생명

'어카운트 인포', '내 연금조회' 서비스를 통해 조회한 결과, 미청구 퇴직금이 있는 경우 가까운 교보생명 고객PLAZA를 방문하여 퇴직연금 수령 접수(신청서류 제출 등)

# Contents

---

## 제도일반 안내 (DB/DC/IRP)

퇴직연금제도 운영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

퇴직급여의 지급

퇴직연금 과세체계

자산·부채관리 원칙과 노후 설계

## DC/IRP 안내 사항

부담금 관련 안내

안정적인 투자 원칙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구조

표준형DC 안내

# 제도일반 안내 (DB/DC/IRP)

## 퇴직연금제도 운영

### 「퇴직연금제도」란?

- 회사(사용자)가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금융회사(퇴직연금 사업자)에 적립하여 금융회사가 근로자(가입자) 퇴직 시 연금 또는 일시금으로 근로자의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퇴직급여제도입니다.
- 회사가 근로자 퇴직급여 지급을 위한 재원을 사외적립하기 때문에 회사가 도산·파산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퇴직금이 안전하게 보장됩니다.



## 퇴직연금제도 종류

DB

### [확정급여형]

- 퇴직연금사업자에 예치한 근로자의 퇴직급여 재원을 회사가 운용
- 근로자는 퇴직 시 확정된 퇴직급여 수령

DC

### [확정기여형]

- 회사는 가입자의 DC계좌로 부담금을 정기적으로 납입하고 가입자가 운용
- 근로자의 퇴직급여가 운용성과에 따라 변동

IRP

### [개인형퇴직연금]

- 근로자가 이직, 퇴직으로 수령한 퇴직급여를 은퇴 시점까지 계속 적립, 운용하여 노후 소득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제도

### [참고] 기업형IRP (10인 미만 특례제도)

근로자 10인 미만 기업에 한해 개별 근로자의 동의를 받거나 근로자의 요구에 따라 개인형퇴직연금제도를 설정하는 경우 규약 작성 없이 퇴직연금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인정해주는 특례 제도로 DC형 퇴직연금제도와 동일하게 적용

# 퇴직연금제도 운영

## 퇴직연금제도별 차이점

구분	확정급여형(DB)	확정기여형(DC)/기업형IRP
퇴직급여 산정 시 기준임금	평균임금	연간 임금총액
퇴직급여 계산	퇴직 시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 X 근속연수	회사가 납입하는 부담금 (연간 임금총액의 1/12이상) + 운용손익
적립금 운용 주체	회사	근로자(가입자)
부담금 납입 지연에 따른 법정 지연이자	없음	· 부담금을 납입하기로 한 날의 다음날부터 퇴직 후 14일까지의 기간 → 연 10/100 ※ 규약에 부담금 납입기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한 경우 그 연장 기일 동안은 지연이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퇴직 후 14일 다음날부터 부담금을 납입하는 날까지의 기간 → 연 20/100
가입자 추가 부담금	불가능 (IRP 가입 시 가능)	연간 1,800만원 한도 (연금저축, 개인형IRP 합산) ※ 연금계좌 추가납입 확대 1) ISA 만기자금 중 연금계좌 전환금액 2)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고령가구 =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 급여 또는 부담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

임금	·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떤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으로 세부적인 임금 포함 항목은 회사를 통해 확인 (일반적인 임금 제외 항목 : 경조금, 위로금, 출장비, 차량유지비, 보험보조금 등 일시적, 불확정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평균임금	· 퇴직이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눈 금액
임금총액	· 1년 동안 지급된 모든 임금의 합계액으로 퇴직급여 산정 대상에 포함되는 임금 항목의 총합

# 퇴직연금제도 운영

## 퇴직연금 제도의 폐지·중단

### 폐지

노사합의로 폐지하는 경우 등을 말하며, 이 때 적립된 금액을 개인형IRP로 이전하고,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한 것으로 봅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폐지신고서를 1개월 이내에 제출하고 급여 명세 및 지급 절차를 근로자에게 통지하며 폐지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미납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38조 제2~5항)

### 중단

회사의 재정압박 또는 적립금 부족 등의 이유로 퇴직연금제도 유지가 어려운 경우 제도의 중단으로 봅니다. 중단된 경우에도 급여지급, 적립금운용, 가입자교육 등 퇴직연금제도의 연속성 유지 및 가입자 보호를 위한 업무는 계속 수행해야 합니다. 또한 제도 중단 기간의 업무처리 방안에 대해 근로자들에게 공지해야 합니다.

※ 퇴직연금제도 폐지·중단 이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 제1항의 퇴직금제도를 적용

## 계약이전 절차

· 노사 협의를 통해 현재 퇴직연금사업자에서 새로운 사업자로 계약이전하기로 결정한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계약이전 검토 및 규약 변경

- 근로자대표의 동의 또는 의견청취를 통한 규약 변경
- 지방노동관서의 장에게 신고·수리

### 계약 체결 및 계약이전 신청

- 이전을 원하는 운용관리기관 및 자산관리기관과 각각 계약 체결
- 현재의 운용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 또는 이전 받을 운용관리기관에 계약이전 신청

### 가입자 정보 및 적립금 이전

- 새로운 운용관리기관에 가입자 정보 이전
- 새로운 자산관리기관에 적립금 이전

### 퇴직연금제도의 운영

- 새로운 사업자가 해당 사업장의 퇴직연금제도를 운영

# 퇴직급여의 수급권 보호

## 퇴직연금 중도인출 및 담보제공

퇴직연금제도의 급여를 받을 권리는 양도하거나 담보로 제공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근로자의 수급권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단, 가입자가 법정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법정 한도(적립금의 100%) 내에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DC/IRP 가입자에 한하며 DB 가입자는 중도인출 불가)

### [중도인출 법정 사유]

- ①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주택 매매계약 체결일로부터 근로자 본인의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 후 1개월 이내 신청 가능)
  - ② 무주택자 전세금/임차보증금 (동일 사업장 내 근로하는 동안 1회로 한정)
  - ③ 본인 또는 부양가족의 6개월 이상 요양 (해당 가입자가 본인 연간 임금총액의 12.5%를 초과하여 부담하는 경우)
  - ④ 파산선고 또는 개인회생절차 개시 결정 (신청일로부터 5년 이내에 가입자가 파산선고를 받거나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 ⑤ 자연재난 및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사회재난으로 인적 또는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 ⑥ 휴업 및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사유로 수급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은 경우 그 원리금 상환 목적의 중도인출
- ※ 근퇴법 상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 담보제공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퇴직연금사업자가 퇴직연금을 담보로 하는 대출상품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 한해 적용되며, 당사는 해당 대출상품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중도인출 시 필요서류]

- 중도인출신청서(회사 명판 및 등록인감 날인, 신청인 이름 및 서명/날인)
- 실명확인증표 사본(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중 택1)
- 중도인출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증빙서류

※ 중도인출 사유별 필요 제출서류는 교보생명 법인콜센터(1588-0770)로 문의 또는 [교보생명PC홈페이지> 고객센터> 고객지원> 필요서류안내> 퇴직연금 관련> 퇴직급여청구] 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교보생명PC홈페이지



### ※ 중도인출 시 적용세율

- DC 회사 부담금과 운용수익 및 IRP 과세이연 퇴직소득은 퇴직소득세로 과세되며, 가입자 추가 부담금 (세액공제분)과 운용수익은 기타 소득세(16.5%)로 과세됩니다. (단, 중도인출 사유중 세법상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관련 소득세법에 따라 적용됨)

### ※ 중도인출 시 운용중인 상품은 매도처리되며, 매도 소요 기일에 따라 지급일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원리금보장형 상품

신청일로부터 3~4영업일 소요

#### 실적배당형 상품

신청일로부터 통상 국내펀드는 4~5영업일, 해외펀드는 8~14영업일이 소요되며, 상품별로 소요 기일이 상이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상품의 약관 또는 투자설명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퇴직급여의 개인형IRP 이전

- 개인형퇴직연금제도(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는 근로자가 이직 또는 퇴직 시 수령하는 퇴직급여를 모아 은퇴 시점까지 보관·운용할 수 있는 퇴직금 전용 계좌입니다.
- 근퇴법 제17조에 따라 퇴직연금가입자의 퇴직급여는 가입자의 개인형IRP로 이전됩니다.  
(퇴직금제도 가입자의 경우 2022.4.14부터 의무 이전)

### ※ 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근퇴법 시행령 제9조)

- ① 55세 이후 퇴직한 경우
- ②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 ③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
- ④ 사망으로 인한 당연 퇴직
- ⑤ 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에 따라 외국인 근로자가 퇴직과 함께 해외로 출국하는 경우
- ⑥ 다른 법률에 의해 급여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제하는 경우 ※급여 공제 후 남은 금액은 IRP 이전

- 개인형IRP로 이전된 퇴직급여는 일시금 또는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며 급여종류별 수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급여종류	수급요건
연금	· 만 55세 이상으로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가입자에게 지급 · 연금지급기간 5년 이상 (개인형IRP에서 가입자부담금만 있을 경우 5년 경과 후 수령 가능)
일시금	· 연금수급요건 미충족하거나 가입자가 일시금 수급을 원할 경우

## 퇴직급여의 지급 절차

### 개인형IRP 개설/퇴직신청 (가입자>>회사)

- 근로자는 금융회사에서 개인형IRP계좌 개설 후 퇴직신청 시 개인형IRP계좌 정보를 제공합니다.
- 법정 외 퇴직금(ex. 명예퇴직금, 퇴직위로금)이 있는 경우 해당 퇴직금의 개인형IRP 이전 여부를 통지합니다.

### 퇴직급여 신청 (회사>>사업자)

- 퇴직연금 담당자는 퇴직연금사업자에 근로자 퇴직 통보 후 퇴직급여 지급을 신청합니다. (퇴직소득원천징수영수증 첨부)  
※ 기업의 도산 등으로 회사가 가입자의 퇴직급여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 가입자가 사업자에게 청구가 가능합니다.  
세부 문의는 교보생명 법인콜센터(1588-0770)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 퇴직연금사업자가 사업장의 폐업 등 도산 사실을 알게 된 경우에는 개별 가입자에 대하여 등록된 정보를 활용하여 서면 등을 통해 추가로 안내합니다.

### 퇴직급여 개인형IRP이전 (사업자>>가입자)

- 적립금 운용자산 매각 후 근로자가 개설한 개인형IRP로 퇴직금을 이전합니다.

# 퇴직급여의 지급

## 퇴직급여의 개인형IRP 이전 효과

퇴직소득세 과세이연	· 개인형IRP로 이전된 퇴직급여와 운용으로 발생한 수익은 인출(일시금 또는 연금) 시점까지 과세이연됩니다.
노후소득원 확보	· 개인형IRP에 가입자 부담으로 추가납입 시 ① 은퇴 후 노후소득이 증가되며, ② 추가납입한 금액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10p 퇴직연금 과세체계 참고) · 종신연금(생보사에서만 지급 가능)으로 수령 시 안정적인 노후소득 확보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편리한 적립금 운용	· 개인형IRP 사업자가 제공하는 우수한 운용 상품 중 가입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상품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여 적립금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 개인형IRP - 연금저축 계좌이체

· 개인형IRP와 연금저축계좌 간에 연금계좌이체를 신청하는 경우 세액공제나 과세이연과 같은 세제혜택을 유지하면서 계좌 간 상호 이체가 가능합니다.

- [계좌이체 요건]**
- ① 만 55세 이상의 연금계좌 가입자
  - ②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이 경과한 연금계좌 (이연퇴직소득 포함시, 5년 미경과 시에도 가능)
  - ③ 전액 이체 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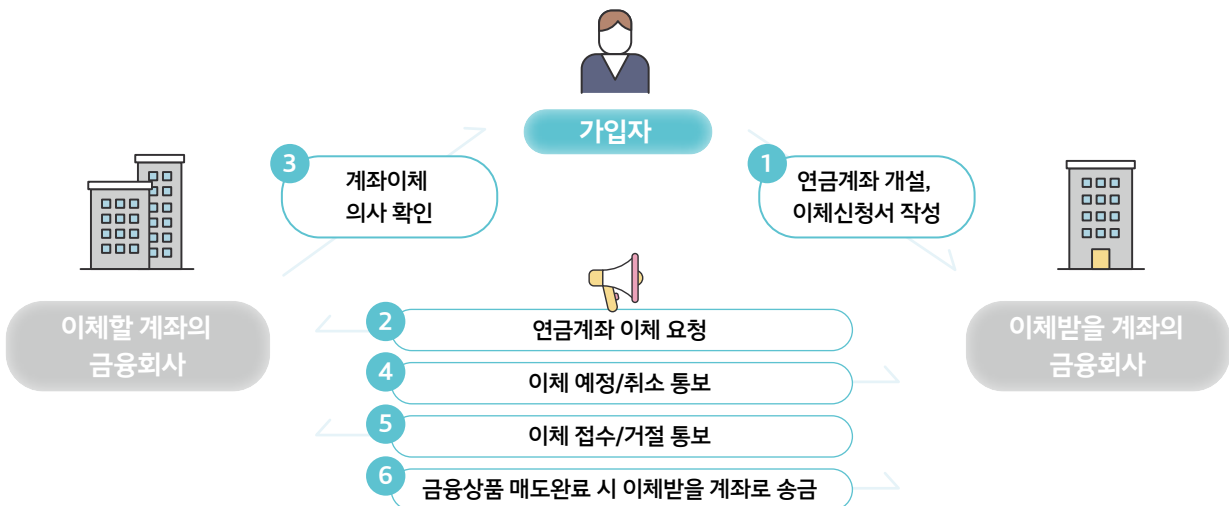
- 단, 아래의 연금계좌는 이체가 제한됩니다.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등을 사유로 법적 지급이 제한된 연금계좌
  - 약관대출, 담보대출 등이 있는 연금계좌
  - 2013.3.1 이후 가입한 연금계좌에서 2013.3.1 이전에 가입한 연금계좌로의 이체
  - 연금수령이 개시된 연금계좌로의 이체

**[이체 효과]**

· 연금계좌이체를 통한 퇴직연금, 개인연금 간 적립금 이전 시 과세가 이연됩니다.

**[이체 절차]**

· 연금계좌이체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진행됩니다.



# 퇴직연금 과세체계

## 퇴직연금 수령방법 및 소득원천에 따른 과세방법

· 퇴직연금에 대한 과세는 ① 부담금 납입, ② 운용수익 발생, ③ 퇴직급여 수령 시점으로 구분되어 이루어 집니다.

### ① 부담금 납입

- 사용자 부담금 : 전액 손비 인정
- 가입자 부담금 : 세액공제

총급여액 (종합소득금액)	세액공제 대상 납입한도	세액 공제율	최대 세액공제금액
5,500만원 이하 (4,500만원)	900만원 [연금저축 600만원 포함]	16.5%	148.5만원
5,500만원 초과 (4,500만원)		13.2%	118.8만원

- ※ 추가납입 한도 : 연간 최대 1,800만원 (연금저축, DC/IRP 합산)
- ※ ISA 만기자금 납입 시 납입액의 10%(300만원 한도) 세액공제 추가
- ※ 1주택 고령가구\*)가 가격이 더 낮은 주택으로 이사한 경우 그 차액(1억원 한도)  
 1) 부부 중 1인 60세 이상

② 운용수익 발생 : 적립금을 운용하여 발생하는 수익에 대해 수령 시점까지 과세이연 됩니다.

③ 퇴직급여 수령 시점 : 적립금 수령 방법 및 소득원천에 따라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원천	연금 수령		연금 외 수령
과세이연된 퇴직소득	수령 연차 10년 이하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X 70%)	퇴직소득세
	수령 연차 10년 초과	연금소득세 (퇴직소득세 X 60%)	
세액공제 받지 않은 가입자 부담금	과세 제외		
세액공제 받은 가입자 부담금	·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 이하 : 연금소득세 - 80세 이상 : 3.3% (종신연금 3.3%) - 70세~79세 : 4.4% - 70세 미만 : 5.5% (종신연금 4.4%) · 연간 연금 수령액 1,500만원 초과 : 종합과세 또는 15% 분리과세		기타소득세 (16.5%)
운용 수익			

- ※ 과세 이연 퇴직소득을 연금 및 연금 외 수령하는 경우 종합과세가 안됩니다.
- ※ 위 세율은 지방소득세를 포함하였습니다.
- ※ 연금 외 수령 시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할 경우 연금소득세로 과세합니다.  
 - 부득이한 사유 : 천재지변, 사망, 해외이주(3년 후), 본인 또는 부양가족 3개월 이상 요양, 개인회생, 파산, 재난 등의 사유로 15일 이상의 입원 등 소득세법 시행령 제20조의2에서 규정하는 사항

# 퇴직연금 과세체계

## 연금 수령 요건

· 연금 수령 시 아래 요건을 갖춘 경우 연금소득세가 적용됩니다.

- 1 55세 이후 연금 수령 개시 신청
- 2 연금계좌 가입일로부터 5년 경과 (단, 연금계좌에 과세이연된 퇴직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기간 상관 없음)
- 3 연금 수령한도 이내에서 인출

※ 연금수령한도 =  $\frac{\text{과세기간 개시일(연금 개시 신청일) 현재 평가금액}}{(11 - \text{연금수령연차})} \times 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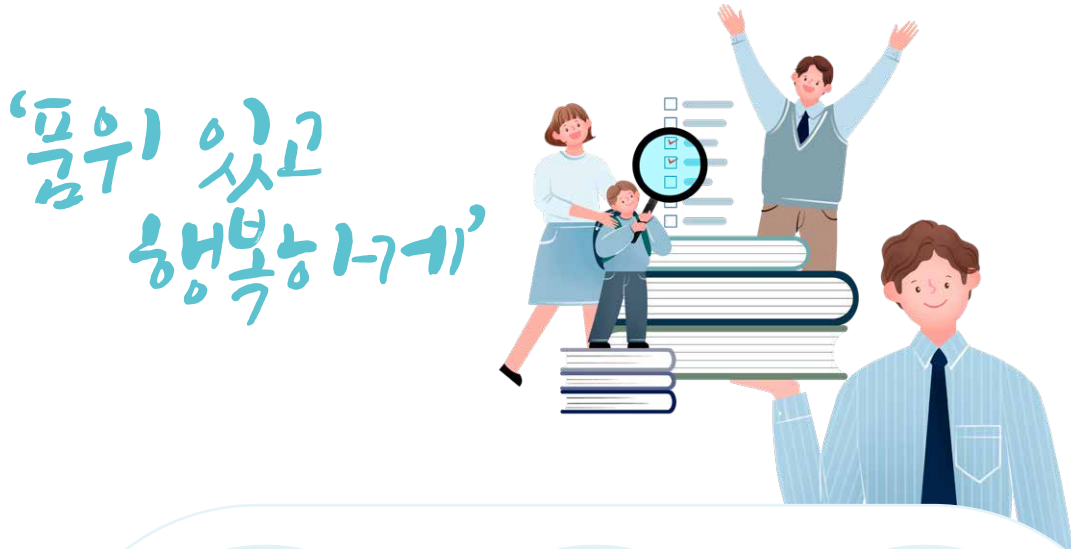
※ 연간 연금수령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세법상 연금 외 수령이 되어 소득원천에 따라 퇴직소득세 또는 기타소득세로 과세됩니다.



# 자산·부채 관리의 원칙과 노후 설계

## 노후준비의 중요성

- 길어지는 은퇴 후 기간을 '편위 있고 행복하게' 영위하기 위해서는 이 기간에도 안정적인 수입이 가능하도록 준비가 필요합니다.
- 은퇴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소득이 중단되는 것입니다.
- 일할 수 있는 기간보다 더 오랜 시간을 살아야 하는 오늘, 이처럼 소득 없는 기간을 계획적으로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연금을 포함한  
연금상품으로  
지속적 현금흐름 유지

소득을 벌어들일 수  
있는 기간 연장

절세와 복리를  
활용한 현명한  
노후자산 투자

## 자산·부채 관리의 일반적 원칙

연령	자산/부채관리 방법
20대 ‘자산관리 시작기’	· 중장기적인 인생의 재무계획 아래 종잣돈 마련에 주력하고 계획을 세워 소비하는 습관을 들이도록 합니다.
30대~40대 ‘자산형성 집중기’	· 소득이 증가하지만 동시에 결혼, 주택마련 등 지출도 늘어나는 시기이므로 ‘목적별’, ‘기간별’ 목적자금 마련 플랜을 통해 언제 찾아올지 모르는 재무이벤트를 준비해야 합니다.
50대~60대 ‘보유자산 안정기’	· 자녀의 대학등록금, 결혼이라는 큰 목돈지출에 대비한 자금관리 뿐만 아니라 은퇴 후에도 지속적으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도록 본격적인 노후소득 점검이 필요합니다.

# DC/IRP 안내 사항

## DC제도 부담금 관련 현황

- 가입자는 회사가 부담하는 부담금 외에 스스로 부담하는 추가 부담금을 가입자의 DC계정(기업형IRP포함)에 납입할 수 있습니다.
- DC(기업형IRP 포함)를 설정한 회사는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 해당하는 부담금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DC(기업형IRP를 설정한 경우 기업형IRP)에 납입해야 하며 가입자는 아래의 경로에서 회사의 부담금 납입 현황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부담금 수준, 납입 시기 등 세부 납입 정보는 회사의 퇴직연금 규약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① 교보생명 PC홈페이지 (<https://www.kyobo.com>) 또는 교보생명 모바일App 접속
- ② 로그인 후 My교보 > 나의 퇴직연금 > 퇴직연금계약조회/관리 > 나의 퇴직연금 현황 에서 조회

## DC/IRP 수수료 할인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9조의2 및 시행령 제24조의2 개정, 퇴직연금 수수료 부과에 관한 고시 제정에 따라 DC/IRP 제도의 디폴트옵션, 실적배당형 수수료가 인하되었습니다. 상세 내용은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App 공지사항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시행일 2024.4.1)

적용대상	할인 내용
IRP 디폴트옵션	· IRP 디폴트옵션(초저위험 제외) 운용수익률이 기준 지표 이하일 경우 디폴트옵션(초저위험 제외)에 대해 운용관리수수료 8% 할인
DC 실적배당형	· DC 실적배당형 상품에 대한 자산관리수수료 2% 할인

## 안정적인 적립금 운용을 위한 투자 원칙

- 가입자는 아래의 안정적인 투자원칙을 참고하여 회사가 납입한 부담금을 적정하게 운용해야 합니다.

### 자산구성 투자성향

- 투자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자신의 투자성향을 진단하여 안정형, 안정추구형, 중립형, 수익추구형, 고수익추구형 중 어느 성향에 해당하는지 판단한 후 투자성향에 따라 상품 유형별 투자비중(원리금 보장형 상품과 실적배당형 상품 구성 비율)을 정하고 상품을 결정해야 합니다.

### 장기 적립식 투자

- 장기 적립식 투자를 하는 경우 이자 및 수익이 원금과 함께 재투자되는 복리효과와 매입비용 평준화 효과(Cost Averaging Effect)로 인하여 운용수익을 높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험자산의 급변동 상황에서도 위험을 최소화 할 수 있습니다.

### 분산투자

- 분산투자는 여러 자산군에 나누어 투자하는 방법으로 같은 자산내에서 여러 종목을 편입해 구성하는 자산내 분산투자, 같은 상품의 매입 시기를 달리하는 시간 분산투자, 완전히 다른 성격의 자산에 투자하는 자산 간 분산투자로 구분됩니다. 분산투자 시 각 자산군별 위험 상쇄작용을 통해 투자위험을 축소하고 안정적인 수익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 적립금 운용방법별 위험과 수익구조

· DC/IRP 가입자는 적립금을 원리금보장형상품과 실적배당형상품으로 운용이 가능하며 운용방법별 수익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 1. 원금과 이자가 보장되는 ‘원리금보장형 상품’

구분	이율보증형(GIC)	금리연동형
특징	일정기간 확정 금리 제공 (1년형, 2년형, 3년형, 5년형)	1개월 단위로 시장금리에 연동되는 공시이율 적용
중도해지 이율	있음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 참고)	없음
예금자 보호	적용대상	적용대상
매도기준	신청일로부터 3~4영업일 소요	

※ 이율보증형 상품은 이율보증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해지(해약, 스위칭, 전부이전, 일부이전 등)될 경우 중도해지 이율이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약관 또는 상품설명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이 상품은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으로 운용되는 DC 또는 개인형IRP의 적립금에 한하여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귀하의 다른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과는 별도로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단, 2개 이상 퇴직연금에 가입한 경우 합하여 5천만원까지 보호합니다.

※ 상품에 가입하시기 전 적용 이율 등에 관하여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단, 신탁연금 가입자는 교보생명 원리금보장형 상품(GIC,금리연동형) 운용이 불가합니다. (퇴직연금감독규정 제12조) 타사 원리금보장형 상품 운용은 가능합니다.

## 2. 운용성과에 따라 운용손익이 변동하는 ‘실적배당형 상품’

구분	실적배당형 보험	실적배당형 펀드
특징	국내외 주식 및 채권에 투자하여 운용하고 그 운용수익을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상품	
유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형	채권형, 채권혼합형, 주식혼합형, 주식형
매도기준	상품별 약관 또는 신탁계약서에 따라 기준가 적용일과 매도일이 상이	

※ 실적배당형 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은 운용실적에 따라 이익 또는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결과는 가입자에게 귀속됩니다.

※ 상품에 가입하시기 전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약관 및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실적배당형 상품의 수익률은 과거 실적으로 미래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운용방법별 수수료 체계 : 퇴직연금 실적배당형 상품의 경우 운영보수, 수탁보수 등 운용보수가 부과되며 이는 펀드 내부에서 부과되어 보수가 차감된 이후의 수익률이 표시됩니다.

※ 해외펀드의 경우 펀드별 약관에 따라 기준가적용일과 매도일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단, 신탁연금 가입자는 교보생명 실적배당형 보험 상품 운용이 불가합니다.

# 디폴트옵션 (사전지정 운용제도)안내

## 디폴트옵션이란

- 퇴직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운용지시하지 않는 경우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하는 제도, 즉 사전지정운용제도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21조2의 제5항 및 21조의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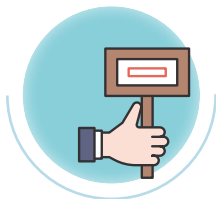
### 적용대상

DC형 퇴직연금 가입자, 개인형/기업형IRP 가입자



### 개정내용

납입 부담금이나 만기 상품에 대한 가입자의 운용지시가 없는 경우 가입자가 사전에 지정한 디폴트옵션 상품으로 적립금이 운용



### 사용자 의무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시한 디폴트옵션 상품을 근로자대표 동의를 거쳐 퇴직연금 규약에 반영 ('23.07.11까지)

※ 근로자대표 : 과반수 노동조합 또는 과반수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



### 가입자 의무

가입자는 퇴직연금사업자로부터 관련 정보를 제공받고 DC가입자는 규약에 있는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IRP가입자는 당사 디폴트옵션 상품 중 하나를 사전 지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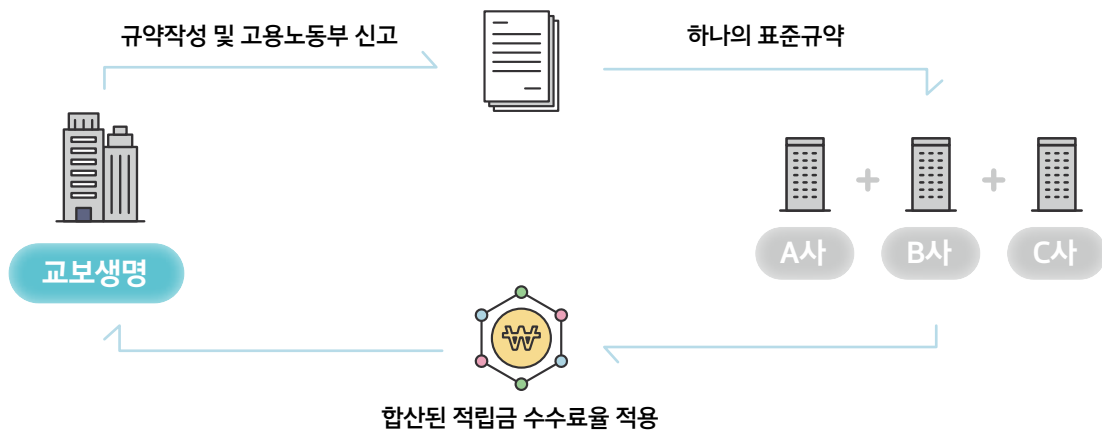
※ 디폴트옵션 도입에 따라 자동으로 연장되던 만기가 있는 상품의 재예치가 2023.7.12일부터 중단되고 대기성 자금으로 운용됩니다.

금리가 낮은 대기성 자금으로 방치 되지 않기 위해 디폴트옵션을 반드시 지정해야 합니다.

# 표준형DC제도 안내

## 표준형DC제도의 개요

- 표준형DC제도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23조에 의거한 퇴직연금제도로 하나의 표준화된 규약에 여러 사업장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교보생명은 표준형DC 퇴직연금 규약을 작성·신고하여 표준형DC제도를 설계하고, 회사는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받아 교보생명 표준형 DC제도에 가입하게 됩니다.
- 표준규약별 합산 적립금으로 운용수수료율이 결정되어 관리 수수료가 절감됩니다.



## 표준규약에 규정된 사항

- 일반적인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규약에 포함되는 사항
- 표준규약을 통해 설정된 제도의 특성과 이를 반영한 명칭
- 가입 대상 사업자의 범위 또는 특성에 관한 사항
- 적립금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가입자가 운용지시를 하지 않는 경우의 운용방법 및 그 선정기준을 포함)
- 제도의 탈퇴 사유 및 절차, 수수료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 표준계약서에 규정된 사항

- 표준규약의 이행에 관한 사항
- 제도의 운영과 관련한 비용 산출 및 부담에 관한 사항
- 운영관리업무와 자산관리업무의 계약 해지, 변경 사유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 그밖에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사항

※ 표준형DC규약의 구체적인 내용은 회사의 퇴직연금 담당자 또는 교보생명 법인콜센터(1588-0770)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